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청구 및 정산소홀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 ○○○과 지방○○○○○ ○○○

②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 ○○○과)

③ 광주광역시 ○○○○○○ 지방○○○○○ ○○○

④ 광주광역시 동구 ○○과 지방○○○○○ ○○○
(전 ○○○○과)

⑤ 광주광역시 동구 ○○과 지방○○○○○ ○○○

⑥ 광주광역시 북구 ○○○○과 지방○○○○○ ○○○
(전 ○○과)

⑦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은 2016. 8. 11.부터 2017. 3. 8.까지 ○○○○○○ ○○○과에서 근무하면서 ‘○○○~○○ ○○ 2단계간 도로개설공사(1차분)’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 ○○○은 2012. 7. 21.부터 2017. 7. 20.까지 ○○○○○○ ○○○과에서 근무하면서 ‘○○○ 조성공사’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 ○○○은 2013. 1. 14.부터 2016. 8. 8.까지 ○○○○○○ ○○○과에

근무하면서 ‘○○○○○○센터 건립 전기공사’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은 2014. 7. 28.부터 2016. 7. 11.까지 동구 ○○○○과에서 근무하면서 ‘○○동 ○○센터 신축공사(건축)’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 ○○○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 북구 ○○○과에서 근무하면서 ‘○○○○○○○○센터 복합 건립사업(1차)’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 ○○○은 2015. 1. 5.부터 2017. 7. 2.까지 광산구 ○○○과에서 근무하면서 지원형식으로 ○○○○과에서 추진한 ‘○○ ○○○○지원센터 신축공사’의 공사 감독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²⁾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 ~1.33%까지 적용함.

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 2014.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붙임]과 같이 총 53건의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공사용 자재,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간판 구매 또는 가시설 설치 비용 등’로 사용하였다.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명목 중 ‘건설기계 신호자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환경관리·신호업무 등 단순노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위 관서에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집행한 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한 결과, [붙임]과 같이 86,252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정산업무 태만

한편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 및 집행 사진 등)를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³⁾'의 경우에는 아래 [사진 1]과 같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업체로부터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여부 등을 확인⁴⁾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 한 물품 등의 증빙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의 적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에서 추진한 [붙임]의 '○○동 ○○○○ 신축공사(건축)' 등 5건의 사업의 경우 [사진1]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⁵⁾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34,845천원을 지급받았으며,

[사진1]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홈텍스 발급사실 조회 현황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년 7. 1. 이후)

4)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계약상대자)를 통해 지정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를 통해 수정신고(신고 금액 축소 또는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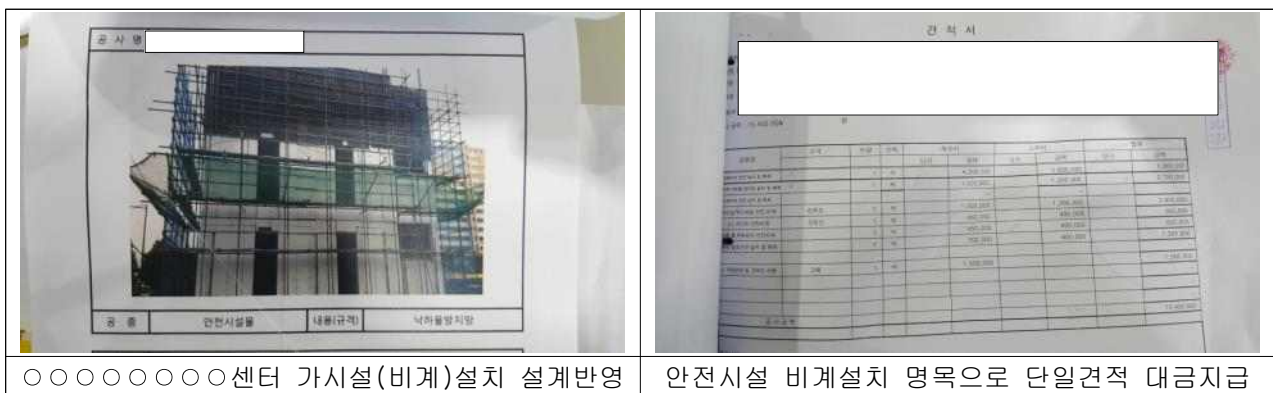
5) 계약상대자의 거래업체와 다른명목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자인서(경위서)를 통해 인정함.

전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더구나 안전관리비 지급 대가의 근거는 1개의 업체로부터 제출된 산출근거 없이 견적서를 기준하여 수량, 일위대가 등의 검토 없이 견적 비용 15,400천원 전체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한 채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설계에 반영된 가시설(비계) 비용과의 중복여부, 추락방지망 설치로 반영된 안전관리비의 대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따라 금번 감사 기간 중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대가의 적정금액 확인을 위해 위 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기 지급된 비용 중 약 3,109천원 상당⁷⁾만이 중복 또는 과다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진3] 현장 가시설 설치에 비용과 혼재 청구



※ 자료근거 : ○○ ○○○○○○센터 신축공사 안전관리비 청구서류 사본

상기와 같이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안전관리비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지급하였으며, 제출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는 감독공무원의 대다수가 1차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회’ 및 계약상대자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7) 당시 공사감독자인 광산구 ○○과 ○○○이 추락방지망 설치 수량 및 타사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산출한 금액임.

발급 목록 확인' 방법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집행 증빙서류(사진)의 중복 여부, 구매내역 사실 확인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태만히 하여 3억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총 53건의 전체 안전관리비 2,526,847천원의 약 5%에 달하는 약 121,097천원 상당을 감액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 동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북구청장은

[시정] 안전관리비를 허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주)○○건설(대표 ○○○), ○○○종합건설(주) (대표 ○○○), ○○산업(주)(대표 ○○○)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347조(사기)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 동구청장, 서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시정]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

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121,097천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미 확인된 ‘3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 집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하여 적의 조치하고 결과를 우리 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전수조사 실시 및 향후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및 ‘월별 매입 목록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사업명을 명시하고 구매 물품 별 세부목록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